의안번호	제 2011 - 22호
의 결 연 월 일	2011. 11. 21. (제37차 회의)

보고안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목 차

I. 제43차 전체회의 ····· 1
1. 일시·장소 ····· 1
2. 참석자 ····· 1
3. 주요 안건 ····· 1
4. 회의 요지 ····· 1
가.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1
나.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4
다. 성범죄 양형기준 보완방안 검토 ····· 7

II. 제44차 전체회의 ····· 10
1. 일시·장소 ····· 10
2. 참석자 ····· 10
3. 주요 안건 ····· 10
4. 회의 요지 ····· 10
가.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10
나.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12

III. 제37차 1팀회의 ····· 13
1. 일시·장소 ····· 13
2. 참석자 ····· 14
3. 주요 안건 ····· 14
4. 회의 요지 ····· 14

IV. 제45차 전체회의 ····· 15
1. 일시·장소 ····· 15
2. 참석자 ····· 15
3. 주요 안건 ····· 15
4. 회의 요지 ····· 15
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16
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안 검토 ····· 23
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25
라.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27
마.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27
바.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28

V. 향후 일정 ····· 29

별첨 정준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심재철, 조석영, “성범죄 집행유예기준 수정안 제안(II)”
김혜정,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
이수정, “성범죄 양형기준과 관련한 논의사항”
강우예,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의견”
홍준호, “폭력범죄 양형기준 검토”
정준화,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김혜정,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에 대한 의견”
홍준호,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검토”
최진녕,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
안효질,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
조석영, “지식재산권범죄군 대상 범죄 검토 요지”
정준화,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심재철, “금융·경제범죄군 유형 및 대상범위 검토”

I. 제43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11. 10. 17.(월) 16:00 ~ 21: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강우예, 범현, 심재철, 이수정, 이정훈, 이주원, 정준화, 조석영, 최진녕, 홍준호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성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 검토

4. 회의 요지

가.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교통방해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데 이견이 없음

(2)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 ① 일반 교통사고, ② 교통사고 후 도주로 대유형을 분류한 후, ①유형은 (i) 교통사고 치상, (ii) 교통사고 치사의 소유형으로 구

분하고, ②유형은 (i)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ii) 교통사고 치상 후 유기도주, (iii)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 (iv)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도주의 소유형으로 분류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 영역별 권고 형량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교통사고 후 도주유형의 제4유형(치사 후 유기도주) 중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 또는 하한을 높이거나 1.5배 또는 2배 가중의 서술식 기준을 두거나 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도주의 법정형이 살인죄와 동일한데, 과실범에 후속된 유기도주죄의 형량범위를 고의범인 살인죄 제1유형의 형량범위보다 높이거나 형량범위 가중의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와 법정형이 동일하고, 실무상 구분하기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 논의 결과, 영역별 권고 형량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데 이견이 없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치상 후 유기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3	치사 후 도주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치사 후 유기도주	3년 - 5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3) 양형인자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양형인자 반영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인 경우,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량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위험운전치사상인 경우’와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이므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음주운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음주운전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 1개만 해당하더라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각 독립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 논의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함

☞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 요구불응인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유형분류(교통사고 후 도주범죄)에서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양형인자에서는 제외함 ☞ 일반가중인자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를 양형인자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중상해'를 특별가중인자로,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로, '경미한 상해'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다수 의견)
-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로, '경미한 상해'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소수 의견)

○ 특별감경인자인 '도주 후 잘못을 뉘우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스스로 현장에 복귀한 경우', 특별가중인자인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감경인자인 '소극 가담'을 양형인자표에서 삭제하는 데 이견이 없음

나.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 '공동 상해'를 별도의 가중적인 유형으로 분리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데 의견이 일치함

○ '보복 목적 상해'를 별도 가중유형으로 분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하지 않고, 가중인자로만 반영하자는 의견

(다수 의견)

- 별도의 가중적인 유형으로 분리하여 설정하자는 의견(소수 의견)
- '보복 목적 상해'를 제2유형(중상해)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소수 의견)

☞ 논의결과, '보복 목적 상해'는 별도의 가중적인 유형으로 분리하여 설정하지 않고, 양형인자표에서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유형분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됨

[1안] 상해범죄를 하나의 형량기준표로 구성하는 방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	중상해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	상습·누범·특수상해			

[2안] 상해범죄를 두 개의 형량기준표로 구성하는 방안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	중상해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 상습·누범·특수상해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누범·특수상해			

☞ 논의결과, [1안]과 [2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무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적정한 안을 제시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2) 양형인자

○ 상해범죄가 공무집행방해범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인 경우의 양형인자 반영 여부 및 방법과 관련하여, 당초 1-1안, 1-2안, 2-1안, 2-2안, 2-3안, 2-4안, 2-5안이 제시되었으나, 논의 결과 다음 표와 같이 2-4안과 2-5안의 2개 안으로 압축됨

방안	처리방안	논거
2-4안 (소수의견)	○ 공집방 :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유지** ○ 상해 : '공무집행방해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각 양형기준 적용하여 도출된 형량범위 중 **높은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 하한으로** 참조	○ 상상적 경합범죄가 중요한 양형인자로 작용함에도 양 범죄의 양형인자표에서 모두 배제하면 적정하지 않은 형량범위 제시하게 되어 부당 ○ 앞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상호 교차적으로 양형인자에 반영함이 타당 ○ 장기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도 형량범위 하한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면, 상상적 경합범과의 불균형 문제는 해결될 것임
2-5안 (다수의견)	○ 공집방 :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인자 **삭제** ○ 상해 : '공무집행방해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반영×** ※각 양형기준 적용하여 도출된 형량범위 중 **높은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 하한으로** 참조	○ 상습·누범상해, 상해치사와의 상상적 경합 등 수많은 형태의 상상적 경합을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인자표에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다양한 상상적 경합 중 유독 공무집행방해와 일반 상해 상호간에서만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일관성 결여 ○ 일정 범위의 형량구간 형태로 권고형량 제시되고, 양형인자표에 열거되지 않은 양형요소도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의 적정 형량 선택에 큰 문제 없음 ○ 2-4안에 의할 경우, 상상적 경합범의 형량범위 하한이 실체적 경합범

		의 하한보다 가중되게 되어 불합리함

○ 기타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잔혹한 범행수법’,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범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범죄’와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 살인죄와 달리 상해죄에 있어서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별로 많지 않아서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굳이 반영한다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또는 범행수법’으로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실제 잔혹한 범행수법에 의한 상해인 경우 살인미수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잔혹한 범행수법이라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공동상해인 경우’를 별도의 가중적 유형으로 분리하지 않는 대신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야 법정형이 가중되는 것을 반영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바꾸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

다. 성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 검토

(1) 공개토론회, 설문조사 실시 여부

○ 장애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 및 양형기준에 관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고, 공개토론회 및 설문조사가 시의적절한 방안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음

(2)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안건 제출 여부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영화 '도가니'가 제기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 관련 쟁점,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 전망 등을 성범죄 양형기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내용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의 건'을 양형위원회 제5차 임시회의(10. 24.)에 제출하는 데 이견이 없음

○ 위 심의안건에서,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유형분류, 형량범위, 양형인자) 수정방안의 검토, ②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개선방안 검토, ③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 및 이탈이유 기재 권고안 의결 제안(양형이유 기재 명확화·구체화 방안)'의 논의 여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추가로 제시됨

- 성범죄의 법정형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고 오히려 너무 높아서 문제인 경우도 있는데, 다만 가끔씩 납득할 수 없는 형량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일부 판결로 인하여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므로 그러한 판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형량만 계속 높이고 양형을 통제하기 위한 도식화 경향으로 흐르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 형사재판이나 양형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정도 또는 등급에 따라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을 구분해서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위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양형인자의 가중치 단위에 따라 유형별 출발 형량범위를 가중·감경하는 방안'의 논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장기적 과제로서 '양형인자의 가중치 단위에 따라 각 유형별 출

발 형량범위를 가중·감경하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이에 대하여, 현행 양형기준의 기본틀과 완전히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은 개정 법률 및 양형기준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현행 법률 및 양형기준을 그 사건에 적용할 경우의 형량범위를 기초로 당해 사건의 양형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
- 1기 양형위원회에서 공개토론회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행 양형기준 방식이 결정된 것인데, 그 당시 채택되지 않은 방안과 유사한 방식을 재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대하여, 전과를 가로축으로 삼지 않았고, 모든 범죄를 통합한 격자식이 아니므로 1기 양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방안과 다르다는 의견

○ 위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 및 이탈이유 기재 권고안 의결 제안'의 논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 및 이탈사유 기재 권고안 의결 제안'도 추가로 심의안건에 포함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경우에 판결서에 기재해야 하는 '양형의 이유'는 '이탈사유'가 아니라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이유'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양형위원회가 이에 배치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사건의 판결문에서 예외 없이 항소이유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기재되는 것인데, "항소심이 양형 통제

기능으로서 사실상 역할이 없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양형위원회 제5차 임시회의(10. 24.)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의 건'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할 사항과 범위를 결정하면, 그에 따라 전문위원단에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II. 제44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11. 10. 24.(월) 10:00 ~ 12:45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9명)

○ 수석전문위원, 김혜정, 범현, 심재철, 정준화, 조석영, 최진녕, 홍준호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4. 회의 요지

가.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36조 제5항(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또는 도용행위)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 포함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특허법 제226조, 실용신안법 제46조 등과는 달리 범행 주체의 제한이 없고, 넓은 의미에서 권리침해의 한 유형이므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다수 의견**)
- 최근 5년간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없어 형량구간 및 양형인자 추출이 매우 어려우므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소수 의견**)

○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침해행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2)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 대유형을 ① 권리침해행위, ② 영업비밀침해행위, ③ 부정경쟁행위로 분류하는 데 이견이 없음

○ 소유형 분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됨

- **제1안** : 별도의 소유형 분류를 하지 않음
- **제1-1안** : ②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소유형을 (i) 국내 침해, (ii) 국외 침해로 나눔
- **제2안** : ① 권리침해행위와 ③ 부정경쟁행위의 소유형을 (i) 단순 침해, (ii) 중대 침해로 나누고, ②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소유형을 (i) 국내 침해, (ii) 국외 침해로 나눔

☞ 논의 결과, 1-1안을 전제로 하여 주무 전문위원이 구체적인 형량범위 설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함

(3) 양형인자

○ 양형인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영업비밀의 유출 자체로 법익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회수되었다고 해서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논의 결과,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나.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관한 검토

(1)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시키는 데 이견이 없음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로서,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불이행,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 모집·매출,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 허위기재(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내지 제15호,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조·변조(제20조 제1항, 제2항)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시키되, 감사보고서 허위기재, 회사관계자의 외부감사 방해(제20조 제3항, 제4항)는 제외하는 데 이견이 없음

○ 상법상 주주총회 부실보고(제626조), 납입가장죄(제628조)는 일단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형기준초안 작성에 착수하되, 추후 구공판 건수 등 통계자료를 검토하기로 함

(2) 금융부패범죄

○ **금융기관의 공공성 침해범죄**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증재범죄(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항), 알선수재(제5조 제3항),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수재(제7조)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는 데 이견이 없음

○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특경법 제8조, 제9조)는 일단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형기준초안 작성에 착수하되, 추후 구공판 건수 등 통계자료를 검토하기로 함

(3) 기타 수증재범죄

○ 형법상 배임수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과 같은 기타 수증재범죄가 금융·경제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이 일치함

○ 수증재범죄군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으나, 그 논의를 3기 양형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4기 양형위원회에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견이 나누어짐

☞ 논의 결과, 기타 수증재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주무 전문위원이 양형기준초안 작성 작업에 착수하기로 함

III. 제37차 1팀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11. 11. 11.(금)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406호 회의실

2. 참석자(6명)

○ 홍준호(팀장), 강우예, 이수정, 이진국, 최진녕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4. 회의 요지

(1)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비밀누설행위 중에서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36조 제5항(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또는 도용행위)만 설정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이견이 없음

(2) 유형분류

○ 소유형 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제2안 또는 제2-1안에서 단순침해와 중대침해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
- 결과만으로 중대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행위반가치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
- 이득액수를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하고 있는 횡령·배임범죄와 유사하게 총매출액, 정품가격 등 액수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의견

- 영업비밀침해행위도 국내, 국외가 아니라 단순, 중대침해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통일성이 있다는 의견

(3) 양형인자

○ 양형인자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양형인자표를 더 세분화하고, “과실로 인한 범행”을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Ⅳ. 제45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11. 11. 14.(월) 14:00 ~ 18:3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2. 참석자(11명)

○ 수석전문위원, 김혜정, 범현, 심재철, 안효질, 이주원, 정준화, 조석영, 최진녕, 홍준호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방안 검토

○ 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4. 회의 요지

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참고자료] 현행 양형기준과 수정안의 유형 및 형량범위 비교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현행 양형기준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1	일반강간	1년6월-3년	3년-5년	5년-7년
2	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3년-5년6월	5년-8년	6년-9년	2	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2년6월-5년	5년-8년	8년-11년
					3	친족관계에 의한강간	4년-7년	7년-10년	10년-13년
3	강도강간	5년-8년	7년-10년	9년-13년	4	강도강간	6년-10년	10년-13년	13년-16년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현행 양형기준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1년	6월-2년	1년6월-3년	1	일반강제추행	-8월	8월-1년6월	1년6월-3년
2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2	특수강제추행	1년6월	3년-5년	5년-7년
					3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	2년6월-5년	5년-7년	7년-9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7년	6년-9년	7년-11년	4	특수강도강제추행	6년-10년	10년-13년	13년-16년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신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제추행	1년6월-3년	3년-5년	5년-7년
2	강제유사성교	3년-5년	5년-7년	7년-9년
3	강간	4년-7년	7년-10년	10년-13년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현행 양형기준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의제강간	1년-3년	2년-4년	3년-6년	1	의제강제추행	-8월	8월-1년6월	1년6월-3년
					2	의제강간	1년6월-3년	3년-5년	5년-7년
2	강제추행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3	강제추행	3년-5년	5년-7년	7년-10년
3	강제유사성교	4년-7년	5년-8년	7년-10년	4	강제유사성교	4년-7년	7년-10년	10년-13년
4	강간	6년-9년	7년-10년	9년-13년	5	강간	6년-10년	10년-13년	13년-16년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현행 양형기준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1년6월-4년	2년-5년	3년-6년	1	일반강제추행/일반강간	2년6월-5년	5년-7년	7년-10년
2	일반강간/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2	친족관계에 의한강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4년-7년	7년-9년	9년-11년
3	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5년-8년	6년-9년	7년-11년	3	주거침입등강간/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	6년-10년	10년-13년	13년-16년

나.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수정안 :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현행 양형기준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의제강간	2년6월-4년	3년-6년	4년-8년	1	의제강제추행/의제강간	2년6월-5년	5년-7년	7년-10년
2	강제추행	3년-6년	5년-8년	7년-10년	2	강제추행/강제유사성교/강간	6년-10년	10년-14년	14년 이상, 무기
3	강제유사성교	5년-8년	7년-10년	8년-12년					
4	강간	7년-10년	9년-13년	11년 이상, 무기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현행 양형기준				수정안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9년-12년	11년-14년	12년 이상, 무기	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10년-13년	13년-16년	16년 이상, 무기 이상

(1) 유형분류

○ 현행 양형기준과 같이, 대유형을 ① 일반적 기준, ②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③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한 후, 일반적 기준에서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하는 것에 대체로 이견이 없음

- 다만, 결과불법을 기준으로 대유형을 ① 강제추행, ② 강간, ③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④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분류하자는 의견도 제시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제2항의 죄(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추행)가 유형분류에 누락되어 있

으므로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소유형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음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이 적용되는 장애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양형기준에서 '장애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를 제외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의 죄질 차이가 있으므로 장애의 정도를 유형분류 또는 양형인자표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장애의 종류, 정도 및 성범죄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복잡한 법률 해석의 문제로서, 실무 또는 판결례가 축적되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선험적으로 양형기준에서 '장애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종류는 성적 의사결정능력 또는 저항능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능력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어서 이를 성범죄 양형기준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능력과 성적 의사결정능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장애 등급에 따라 분류를 해서 양형기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성범죄 양형인자에 있어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성급하게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구성요건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양형기준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간음, 추행' 구성요건이 삭제됨으로써 처벌범위가 오히려 좁아졌다는 의견
- 개정 법률에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간음, 추행'의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입법의 불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양형기준의 설정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의견
- '강간'의 법적 개념 변경 없이 남자에 대한 강간이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며, 앞으로 강간 개념을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강제유사성교 규정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

(2) 형량범위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이외의 유형도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성폭법 및 아·청법의 개정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형량범위를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도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
- 성범죄는 다양한 죄질의 범죄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관련 없는 부분의 형량범위 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

○ ① **기본영역 형량범위 하한을 법정형 하한과 일치**시키고, ② **영역별 형량범위의 중첩을 제거하는 방식**의 형량범위 설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견해	논거
찬성 의견	○ 양형기준은 전형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삼아 형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양형인자 평가원칙을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사안이 있다면 이유를 기재하고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것이 타당 ○ 법정형은 대부분 특정 범죄의 전형적인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전형적인 사안이라면 법정형 하한을 기본영역 하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 ○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감경, 기본, 가중영역에 모두 중첩되는 형량범위도 존재하여 권고영역의 구분취지가 몰각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영역간 형량범위 중첩은 지양되어야 함 ○ 법관의 양형이 입법자의 양형보다 좀 더 중시되는 현행 양형기준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은 법정형 하한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다른 범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중한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먼저 기본영역 하한과 법정형 일치 방식을 도입해서 시행한 후, 실무에서의 적용 및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음 ○ 현행법상 성범죄 관련 구성요건이 매우 복잡하므로 개별 성범죄의 죄질에 대한 입법자의 평가 및 의사는 결국 법정형 하한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음
반대 의견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별양형인자가 갖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달라서 특별감경인자의 중요성이 특별가중인자보다 큰 경우에는 법정형보다 낮게 작량감경한 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수정안은 이러한 경우를 차단해 버리는 문제가 있음 ○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가 범죄유형별로 중요한 양형인자를 망라하지 못하고, 일반양형인자와의 중요성 차이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특별양형인자의 개수 비교라는 획일적 평가방식에 따른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역간 형량범위 중첩이 불가피함 ○ 영역간 형량범위 중첩을 두지 않으면, 중요한 양형인자 몇 개 이외에는 아무리 많은 다른 양형인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권고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매우 부당함 ○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만 위 원칙을 도입할 논리적 필연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다른 범죄군 양형기준과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해치게 됨 ○ 성범죄의 양형인자표상 가중인자에 비하여 감경인자의 개수가 지나치게 적고, 강간죄의 경우 처벌불원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적용할 만한 특별감경인자 없는데, 기본영역 하한을 법정형 하한과 일치시킬 경우 작량감경사유가 있어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작량감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중대한 문제 발생 ○ 단순히 법정형 하한을 기본영역 하한으로 맞출 경우, 개별 사안에서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사건이 많이 생길 것인데, 양형기준 이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함이 타당 ○ ‘징역 10년 이하’와 같이 법정형 상한만 규정된 범죄의 경우, 기본영역 하한과 법정형 하한 일치 원칙은 적용될 수 없어서 어차피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도 없음

(3) 양형인자

○ **'신고의무자',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함

○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견해	논거
특별감경인자로 존치하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자는 의견	○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매우 중요 ○ 피해자가 친족, 아동, 장애인인 경우에는 처벌불원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외부 환경에 의하여 왜곡되는 부당한 합의를 배제할 수 있음 ○ 처벌불원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가 거의 없는 성범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로 변경할 경우, 대부분 가중영역에 해당하게 되어 권고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높아짐 ○ '처벌불원'을 권고영역 결정에 영향력이 없는 일반감경인자로 변경하면, 가해자 측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할 유인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문제 발생 ○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 또는 유사한 내용의 별개 사건의 피고인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반성 및 사죄하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에게 유의미한 형량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함
일반감경인자로 변경하자는 의견	○ 피해자가 아동, 장애인인 경우,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처벌불원이 큰 의미가 없음 ○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결코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금전에 의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는 재산범죄에 비하여 처벌불원의 의미가 약함 ○ 성범죄가 점차 비친고죄화되는 현상을 존중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와는 달리 접근해야 함 ○ 대부분의 아동, 장애인은 소송능력이나 스스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경우가 가능할 지는 의문

☞ 논의 결과, ① 진지한 반성 및 합의를 위한 노력(가해자 태도 요소), ②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또는 검증(피해자 의사 요소), ③ 합의의 상당성에 대한 확인(합의의 상당성 요소)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시켜 주무 전문위원이 '처벌불원'의 개념을 새로이 규정한 수정안을 작성하기로 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높은 형량범위를 설정한 이상 특별가중인자로 다시 반영하는 것은 이중평가에 해당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인자에서 제외**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도 제외**하자는 의견(**다수 의견**)

  ※ 수정안의 권고 형량범위가 유지됨을 조건으로 해서 다수 의견에 찬성하는 별개 의견도 있음

- 13세 미만인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한번 더 보호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이중평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에도 추가**하자는 의견(**소수 의견**)

○ 그 밖에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중증 장애인 경우를 가중인자로, 경증 장애인 경우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 실무나 판례의 축적 없이 성범죄에 있어서 장애의 정도를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나. 성범죄 집행유예기준 수정안 검토

○ 성범죄 집행유예기준의 수정 여부 및 방안과 관련하여 1안(전면 수정안)은 현실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고, **2안(부기 방안)**에 관하여는 다

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성범죄에 한하여 실형을 권고하는 양형인자 또는 유형을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고, 다만 어떠한 사유 또는 내용을 부기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부기방안은 법관의 양형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왜곡하게 되어 부당하고, 성범죄만 특별히 실형 권고 사유를 기재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며, 다른 범죄군 집행유예기준과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의견
- 세미나 등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유예 여부 결정에 있어서 관대한 온정주의를 극복하려는 판사의 인식 전환 및 자세가 보다 중요하고, 원칙 없는 집행유예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집행유예 기준의 강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 제2안 중 [수정안]의 내용은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등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범죄군별 집행유예 기준을 통일적으로 재검토해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만 예외적인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모든 범죄별 집행유예 기준을 일시에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각 범죄군마다 실형권고 사유를 선정해서 기재하여 검증하는 방식으로 집행유예 기준을 차례차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위증, 무고와 같이 강력범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서는 실형을 권

고할 수 있는 사유들이 별로 없으므로 2안은 살인, 성범죄, 뇌물, 강도 등 이외의 범죄에는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의견

- 만약 위 방식이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관련되어 버리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라는 기준이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및 실형 선고 여부라는 기준에 의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압박이 가해지게 되어 영장 단계에서 양형기준을 원용한 압력이 부당하게 가해질 위험이 있다는 의견

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제시된 양형기준초안과 같이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데 이견이 없음

(2) 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데 이견이 없으나,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중한 상해는 치료기간 4주 이상으로서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4주 이상을 모두 포섭하는 개념은 아니므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경미한 상해가 치료기간 2주 이하이고, 중한 상해가 치료기간 4

주 이상이라면, 중한 상해나 경미한 상해 아닌 상해는 치료기간 3주 밖에 없으므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할 의미가 없으므로 일반가중인자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현행 양형기준에서 '중한 상해'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치료기간이 4주~5주 이상인 경우'로서'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든가 아예 '4주~5주' 요건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에 이견이 없음

○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 다만,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될 정도로 유의미한 양형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라는 요건을 부가하자는 의견도 제시됨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지한 뉘우침은 '처벌불원'에 당연히 포함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 없이는 처벌불원이 있기 어려우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는 별도의 양형인자와 혼돈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

(3) 집행유예기준

○ 제시된 양형기준초안의 집행유예기준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주요긍정사유 중 '종합보험 가입'을 일반긍정사유로 변경하고, 일반긍정사유 중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을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주무 전문위원이 참작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함

라.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제시된 양형기준초안과 같이 유형분류하는 데 이견이 없음

- 다만, 특수폭행·협박을 흉기등폭행·협박으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권고 형량범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폭행, 협박범죄 형량기준표에서 상습·누범·특수폭행, 상습·누범·특수협박의 형량범위가 법정형에 비하여 낮으므로 형량범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주무 전문위원이 권고 형량범위를 재검토하기로 함

(2) 양형인자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특별가중인자에 '누범'이 누락되었으므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주무 전문위원이 지적된 양형인자를 보완하기로 함

마.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 유형분류

○ 대유형을 권리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로 3분하는 데 이견이 없음

○ 소유형 분류 여부 및 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제1안	제1-1안	제2안	제2-1안
	○ 권리침해행위 ○ 영업비밀침해 ○ 부정경쟁행위	○ 권리침해행위 ○ 영업비밀침해 - 국내침해 - 국외침해 ○ 부정경쟁행위	○ 권리침해행위 - 단순침해 - 중대침해 ○ 영업비밀침해 - 국내침해 - 국외침해 ○ 부정경쟁행위 - 단순침해 - 중대침해	○ 권리침해행위 - 단순침해 - 중대침해 ○ 영업비밀침해 - 단순침해 - 중대침해 ○ 부정경쟁행위 - 단순침해 - 중대침해

☞ 각 유형분류 방안이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 전문위원 사이에 의견이 고르게 나뉘고 있음

바. 금융·경제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1) 유형분류

○ 대유형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와 **금융기관의 공공성 침해범죄**로 구분하는 데 이견이 없음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는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을 기준으로 5개의 소유형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2개의 소유형으로, 금융기관의 공공성 침해범죄는 금품수수액을 기준으로 6개의 소유형으로 구분하는 데 이견이 없음

(2) 형량범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의 형량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범행 태양이 계획적·조직적이고 사기적이어서 개인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자체를 혼란시키므로 규범적 조정을 해서라도 횡령·배임범죄의 형량범위보다 높게 설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소수 의견)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사기죄와 달리 기망과 인과관계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실제 시세조종행위 등과 인과관계 있는 이득보다 더 과대하게 이득액이 평가될 수도 있고, 이득액의 2~3배 상당의 벌금도 대부분 부과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정형이 동일한 횡령·배임범죄의 형량범위보다 높게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다수 의견)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범죄의 형량범위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음

○ 금융기관의 공공성 침해범죄 중,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및 증재죄의 형량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없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수재의 형량범위에 관하여는 선고형 통계를 검토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이견이 없음

V.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46차 전체회의는 양형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개최하기로 함